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9일, 오세희의원 등 16인

나. 회 부 일 자: 2024년 11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2.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9.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9.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오세희의원)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에 대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근거 마련

개정안은 ① 직접구매 해외제품 및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3조제4호·제5호),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제15조의2제1항·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신 설>	제3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직접구매 해외제품”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신 설>	5. “해외통신판매중개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현 행	개 정 안
	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말한다)로서 매출액, 소비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제9조의4(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해외제품(통관단계에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단계에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과 합동으로 통관절차 완료 전에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제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통관단계에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제9조의3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삭제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의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내용과 결과 제공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안전성조사 결과,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미	② ---------- 안전성조사(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포함한다)----------

현 행	개 정 안
리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로 해외직구 시장의 규모가 확대[1)2)]됨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국내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관계기관의 안전성조사 현황]

조사기관	조사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 448개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조사(2회) - 85개 위해제품 발견
관세청	▸ 310개 어린이제품 조사(2회) - 55개 위해제품 발견 ▸ 454개 접촉성 금속 장신구 조사(2회) - 139개 위해제품 발견
환경부	▸ 415개 접촉성 금속 장신구 조사(1회) - 49개 위해제품 발견
소비자원	▸ 137개 생활용품·어린이제품 조사(5회) - 64개 위해제품 발견 ▸ 구매대행 27개 어린이제품(완구) 조사(1회) - 10개 위해제품 발견
서울시	▸ 324개 어린이 제품 등 조사(18회) - 98개 위해제품 발견
경기도	▸ 70개 어린이제품 등 조사(1회) - 37개 위해제품 발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 온라인 해외직구 거래액 : ('21년) 5조 2,574억원 → ('22년) 5조 9,454억원 → ('23년) 6조 6,819억원 → ('24년) 7조 9,583억원(잠정치) (출처: 통계청 온라인 쇼핑동향)

2) 특히,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가 증가함.
- 종합몰 앱 국내 사용자수('24.3월) : 쿠팡(3,086만), 알리(887만), 테무(829만), 11번가(740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소비자가 안심하고 해외직수 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을 마련한다」, '24.5.13.)

현행법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나 '수입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고[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의 권고 또는 수거등의 명령을[4],

---

3)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2.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의2.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성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열람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이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관절차 완료 전에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하기 위하여 불법·불량제품 유통 사업자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 그 조사 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 내용과 결과의 보관·열람,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통관 전의 수입제품’에 대하여는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할 수 있음[5].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의 경우 안전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6]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해한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하 “중대한 결함”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리 또는 개선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 ③ (생 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관 전의 수입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제11조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1.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생 략)

6) 수입물품은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기준 등을 충족하였음을 관련 기관에서 승인·허가·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입요건을 정하고 있는 「대외무역법」이나 개별 법령은 대부분 자가사용을 위한 물품에 대해 수입요건을 면제하거나 수입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해한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 제9조의4제1항 후단 및 제4항은 통관단계에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과 합동으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관세법」 제246조의3[7]에서 관세청장과 협업

---

7) 「관세법」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①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은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관장과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필요한 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 경우 해당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협업검사센터를 주요 공항·항만에 설치할 수 있고, 세관장에게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자체 검사 설비를 지원하는 등 원활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⑦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⑧ 제7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부처의 합동검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불필요하며,

현행법 제9조의3은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대상 범위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대상 범위를 현행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8]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모든 안전성 우려 제품에 대해서 관세청에 요청하기만 하면 합동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안전성조사 요건 비교]

시중 유통 제품 (현행법 제9조제1항)	수입제품 (현행법 제9조의3)	직접구매 해외제품 (개정안 제9조의4제1항)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	1.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 2. 「어린이제품 안전 특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

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 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8)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2.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의2.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 경우 2.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의2.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인 경우 2.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의2.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고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과 EU 등도 안전관리 법률을 개정하여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관리 국내외 사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직접구매 해외식품 정의, 위해정보 게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지정 등 직구 식품 규제 포함('22.2.18. 시행) ○ **(일본)**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개정('24.6.26. 공포, 9개월 이내 시행) - 수입 행위에 해외직구 반입 행위 포함, 국내 대리인 선임 의무 신설, 온라인 플랫폼에게 판매자의 위해방지 조치, 사고 정보 제공, 사고 발생 통지 등의 협력 책무 신설 ○ **(EU)** 「일반제품안전규칙(regulation)」 제정('23.5.23. 공포, '24.12.13. 적용) - 해외사업자에 책임자 성명·연락처 등 표시, 대리인 지정 의무 신설, 온라인 플랫폼에게 위험제품 제거 등 명령 이행, 위험제품 탐지 등을 위한 자율적 조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협의사항 추가

개정안은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제4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 ① 제품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9]은 제품의 안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9)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 ① 제품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불법·불량제품의 수입·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사전적인 안전관리 또는 사후적인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

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두고 있음.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협의사항은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불법·불량제품의 수입·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사전적인 안전관리 또는 사후적인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임.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개요]

□ (배경)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을 계기로, 범부처 차원의 제품안전 관련 관계 부처 협업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17.3.21. 공포, '17.9.22. 시행)

□ (구성) 제품안전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필요시 분과협의회 운영 가능하며, 비관리제품 관련 검토를 위한 위험요소평가위원회를 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

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④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⑤ 그 밖에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요기능) 사전 안전관리 또는 사후 시장관리 조치 필요제품에 대한 소관 부처 조정 등

구분	성격	주요기능
정책협의회	법정 협의체	❶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❷ 불법·불량제품의 수입·유통 제한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 ❸ 사전 안전관리/사후 시장관리 조치 필요제품의 소관부처 조정 ❹ 그 밖에 제품안전 관련 중요 사항
실무협의회	법정 협의체	❶ 정책협의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필요사항 ❷ 그 밖에 정책협의회 위원장이 실무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분과협의회	법정 협의체	안건별 담당부처간 협의를 위하여 개최 가능
위험요소평가 위원회	자문기구	비관리품목에 대한 위험요소 평가 및 안전관리 검토가 필요한 비관리품목에 대한 소관부처(안) 마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등에서 각각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 중으로, 관계 부처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 관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직접구매 해외제품 관련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은 현행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불법·불량제품의 수입·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과 중복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을 현행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부처 간 협력 외에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삭제 등 권고 및 명령 근거 마련

개정안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사이버몰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삭제 등 조치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1조의2 신설), ②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삭제 등 조치의 권고 또는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권고나 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삭제 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의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삭제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⑤ 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공표, 제3항에 따른 삭제등의 명령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받은 제품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가 권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사업자 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삭제등을 권고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삭제등을 명령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권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명령,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는	③ ----------사업자 또

현 행	개 정 안
같은 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생 략)	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의 삭제 등 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제품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가 그 권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불합리한 삭제 등 조치를 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서도 불복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서 삭제 등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외' 사업자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안 제11조의2제1항의 삭제 등 권고와 같은 조 제3항의 삭제 등 명령의 차이가 불분명하여 규제기관 및 피규제기업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규제사항은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삭제등 권고와 삭제등 명령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10],

안 제11조의2제2항은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권고 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삭제등 권고를 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0) 위해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서는 권고하고, 안전성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명령하도록 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7. 기타 사항

없 음.